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◆◆◆와 그의 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1층 점포 33㎡를 임차보증금 30,000,000원에 1년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위 임차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.
- 2. 피고는 위 건물을 매수할 때 소외 ◆◆◆↑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 무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며, 원고도 그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- 3. 그 뒤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, 원고는 3개월 전에 피형 기계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, 피고는 를 이유 없이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(건물)

1. 갑 제2호증

임대차계약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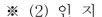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| | | | Kac. |
|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소멸시효 | 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^^ |
| 제출부수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| | |
| 비용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| | |
| | 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| | |
| 불복절차 | 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| | |
| 및 기 간 | 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| |
| | ·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 | | |
| 기 타 | 하는 한편,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, 그 인수 | | |
| |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| | |
| |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,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 | | |
| | 에 대한 채권자 즉,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함(대법원 2001. 4. 27. 선 | | |
| | 고 2000다69026 판결). | | |
| | ·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 | | |
| | 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 | | |
| | 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 | | |
| | 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| | |
| | 것이 아님(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28698 판결). | | |
| | ·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민 | ·료 전 6월부터 |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|
| |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| | |
| | 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| | |
| | 것으로 보며,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| | |
| | 데,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| | |
| | 수 있고,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| | |
| | 발생함(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, 제5항. 다만 이 규정은 | | |
| | 2002. 11. 1. 이후 체결의 | 되거나 갱신된 성 | 상가건물임대차부터 적용됨). |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

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

www.klac.or.krd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